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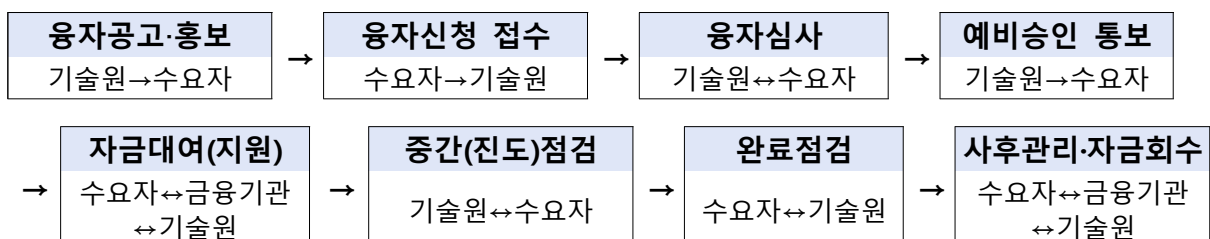
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 개요

1. 사업 개요

- (내용) 자원순환, 대기 등 환경산업을 육성하고, 온실가스 저감설비, 오염방지시설 등 녹색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용자 지원
 - ※ (근거)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 기후부 고시 「환경개선특별회계 용자금 지원조건」
- (변동금리) 매분기 고시된 금리로 민간은행을 통해 용자, 민간은행에는 용자수수료(0.9%) 제공
- (고정금리) 민간자금(산업은행) 차입하여 고시금리(시중금리보다↓)로 대출, 시중금리 - 고시금리 차이만큼 대출실행 은행에 보전(이차보전)
 - ※ 용자금은 지원 후 최장 10년간 원금·이자 회수하여 산업은행으로 상환
- (대상)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산업단지관리공단 등)
- (주체·기간) 기후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0년~
- (금리) 2.80% ('26년 3분기 기준) ※ 동기간 시중금리는 약 4.5% 수준

구분	지원대상	지원분야	용자 규모	기업당 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환경 산업	중소·중견 환경기업	시설설치	1,000억원	100억원	3년 거치 7년 상환	분기 변동금리
		성장기반	1,000억원	10억원	2년 거치 3년 상환	
녹색 전환	중소·중견 기업 (환경 포함)	오염방지시설	1,300억원	300억원	3년 거치 7년 상환	분기 고정금리 (이차보전)
		온실가스 배출저감설비	819억원	100억원		분기 변동금리

- (절차) 공고(1월) → 접수·심사(2월) → 자금대여(~4월) → 상환(최대 10년)



2. 오염방지시설 - 자원순환 분야 지원대상

- ① (공정개선 시설) 물질정제, 물질대체에 의한 원료 변경과 해당 제조 공정 일부 또는 전체 공정의 변경, 설비 변경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시설

< 지원가능 예시 > ※ 지원사례 없음

- ▶ 수용성 절삭유 분사방식을 극소량 분사설비로 전환하여 폐절삭유·슬러지 발생 감량
- ▶ 유기용제 세척 설비를 초음파·수계 세척 공정으로 전환하여 지정폐기물 발생 감축

- ② (폐기물 재이용시설)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해당 공정의 원료 또는 부원료로 재사용하거나 다른 공정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설치하는 시설

< 지원가능 예시 > ※ 지원사례 없음

- ▶ 플라스틱 사출 공정 내 불량품·부산물을 즉시 분쇄 후 원료로 재이용하는 설비 구축
- ▶ 유리 가공 중 발생하는 파유리를 공정 내에서 자동 수거·파쇄 후 용융로 원료로 투입하는 재이용 공정 도입

- ③ (폐기물 재활용시설)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시설과 연속선상에 설치하는 「자원재활용법」 제2조제10호의 재활용시설 중 기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수집·운반·보관, △중간가공, △전처리, △퇴비·사료·에너지화, △중간·최종재활용 등

< 주요 지원사례 > ※ 지원사례 1건

-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고속발효기, 액비 생산설비 지원 ('26년, 570백만원 승인)

- ④ [27.1월 추가 예정] (폐기물 발생 억제시설)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거나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기 위한 시설·설비 공사

< 지원가능 예시 >

- ▶ 1회용품 사용 중인 카페, 장례식장, 놀이공원, 경기장 등에서 다회용기 사용 (1회용품 사용 억제)을 위해 세척장·세척기(식기·텀블러 등) 설치, 배관 공사 등 지원

[10] 폐기물관리법

- <제2조 9호 및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감량화시설
 -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폐기물감량화시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4] - 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종류 >**1. 공정 개선시설**

물질정제, 물질대체에 의한 원료 변경과 해당 제조공정 일부 또는 전체 공정의 변경, 설비 변경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시설

2. 폐기물 재이용시설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해당 공정의 원료 또는 부원료로 재사용하거나 다른 공정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설치하는 시설

3. 폐기물 재활용시설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시설과 연속선상에 설치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재활용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4. 그 밖의 폐기물 감량화시설

사업장폐기물의 발생과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자원재활용법 제2조제10호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
2.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溶融施設) 등의 중간가공시설
3.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시설
4.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前處理) 장치·장비·설비
5. 유기성(有氣性) 폐기물을 이용한 퇴비화·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

-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같은 항 제6호의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같은 항 제7호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장비·설비 등
-

참고 2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27.1월 개정(안)

[10] 폐기물관리법

- <제2조 9호 및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감량화시설
 -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폐기물감량화시설

[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추가 예정]

- <제10조의3> 포장폐기물 발생과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시설·설비 공사